#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71

발의연월일: 2021. 8. 13.

발 의 자:이수진・이형석・이성만

임오경 · 김종민 · 이규민

박재호 • 이용빈 • 박상혁

강선우 · 장철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공군 및 해군 등에서 현역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음. 그러나 군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물론이고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군의 자정노력만으로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의해결과 재발방지 등이 요원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 등이 군 외부 전문기관에 원활하게 알려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국회는 2015년 7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6. 6. 30. 시행)을 제정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근거를 마련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3인인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을 증원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설치하고자 함. 아울러,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 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 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4명"를 "6명"으로, "2명을 포함한다)"를 "3명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 각각 1명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사무처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인 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둔다"로 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 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보고서"를 "보고서(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장(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장(제56조부터 제63조까지)을 각 각 제6장(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장(제63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하고, 제5장(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등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

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 위원회를 둔다.
  -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군인권보호관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 다.
  - 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의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결정,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
  -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

- 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 4.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5.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

우에 한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 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 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군부대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⑦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진정의 원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정인이 입증하면 그 사정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

- 상 지나서 진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 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된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해야하며, 제36조제7항제2호에도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하여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종전의 제58조) 중 "제51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59조) 중 "제52조"를 "제59조"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를 "제60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말한다.</u>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u> 병(兵)</u>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
	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
	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
	하는 예비역·보충역, 군
	<u> 무원</u>
<u> &lt;신 설&gt;</u>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
	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
	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
	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

# <신 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상임위 원 <u>2명을 포함한다) <후단</u> 신설>
  - 2. · 3. (생략)
  - ③ ~ ⑧ (생 략)
-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u>말한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u>4명</u>
<u>13명</u>
②
<u>,</u>
1 <u>6명</u>
<u>3명을 포함한다).</u> <u>이 경우</u>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
<u>각각 1명은 제51조제1항에 따</u>
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
여 선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처) ①
두며, 사무처에는 제51조제1항
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둔다.

- ② ~ ④ (생 략)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⑥ (생 략)

   <u><신 설></u>
-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 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 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 에 관한 <u>보고서</u>를 작성하여 대 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② ~ ④ (생 략)
-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의뢰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군 내 인권 개선
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
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보고서(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u>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
조) ①
<u>수</u> 사기관에
②
<u> 수사기관의 장</u>

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_\_\_\_\_

---.

제5장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 호위원회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등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한다)으로 한다.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 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 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 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 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u>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u> <u>위원으로 구성한다.</u>

-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군인권보 호관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 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 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
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의 방
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결
정,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
호의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u><신 설></u>

위임한다.

-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을 포함한다)·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
  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 사 개시
- 4.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5.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및 홍보
-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

   조
-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

   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

   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

   인과의 협력
-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신 설>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

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 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군부 대의 장에게 그 취지・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대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의 중단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
 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

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 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 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 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군부대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할 수 있다.
- ①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신 설>

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 는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 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 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정인이 입증하면 그 사정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 는 제32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이 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
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

<u><신</u> 설>

제5장 보칙 략)

에 대하여 현장 조사 또는 감 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 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 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 장조사 또는 감정(이하 "자료 제출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 해야하며, 제36조제7항제2호에 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 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군인권 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 사에 대하여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 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생 제58조(자격 사칭의 금지)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생 제59조(비밀누설의 금지) (현행

략) 제52조와 같음)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생략) (현행 제53조와 같음)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생 제61조(공무원 등의 파견) (현행 략) 제54조와 같음) 제62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현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생 략) 행 제55조와 같음)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생 제63조(인권옹호 업무방해) (현행 략) 제56조와 같음) 제64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생 략) (현행 제57조와 같음)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 제65조(자격 사칭) 제58조----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 제66조(비밀누설) 제59조----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생 제67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현 략) 행 제60조와 같음) 제68조(비밀침해) (현행 제61조와 제61조(비밀침해) (생략) 같음)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생 략)	의제) (현행 제62조와 같음)
<u>제63조</u>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제70조(과태료) ①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u>제24조제1</u>	1제24조제1
<u>항의 규정에 의한</u> 방문조사	<u>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u>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u>제60조</u>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u>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